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53
----------	-------

발의연월일 : 2026. 03. 30.

발 의 자 : 김교홍 · 정일영 · 노종면
허종식 · 이용우 · 이기현
소병훈 · 김재원 · 조정식
김남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사행성이 있는 게임 등을 매개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음. 학업 중단, 채무 발생, 학교폭력 및 범죄 연루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됐지만, 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대상별 교육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 운영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아울러 도박문제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증가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092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 외에 건전한 금융·경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의 인증) ① 위원회는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체계
 2.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및 사업 운영 기반의 적정성
 3. 기관의 윤리성 및 책임성
 4. 사업 수행 성과 및 관리 체계
 5. 그 밖에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하여 개선 권고, 인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평가 방법, 재인증 절차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92호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④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법률 제21092호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에 따른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예방치유원에서 양성한 도박문제 예방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u> <u>⑥ 제4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 외에 건전한 금융·경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한다.</u> <u>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5(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수행기관의 인증) ① 위원회는 도박문제 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u>

위하여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
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 체
계

2.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및 사업 운영 기반의
적정성

3. 기관의 윤리성 및 책임성

4. 사업 수행 성과 및 관리 체
계

5. 그 밖에 도박문제 예방·치
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
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정기
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재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
가 결과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
하여 개선 권고, 인증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인증 기준, 평가 방법, 재인증 절차 및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